



産業界와의 共同研究開發事業에 重點

—74年度 科技處 調查研究開發事業의 基本方向 밝혀—

- ……科學技術處는 74年度의 調查研究……
- ……開發事業에 있어서의 投資方向을 産業……
- ……技術開發을 爲한 政府와 企業體의 共同研……
- ……究에 重點을 두기로 確定 발표 하고 各企業의……
- ……積極的인 參與를 기대하고 있다. 科學技術處의 「調……
- ……査研究開發事業」은 해마다 實施하는 繼續事業……
- ……으로서 67年以後 73年 7月末까지 總 658……
- ……件의 課題를 選定. 10億4千2百3萬원……
- ……研究費를 支給하였다. ……

科技處에서 行한 研究課題의 分野別 配定件數를 보면 農水産等 1次産業에 138件 機械 造船等 2次産業에 235件, 社會間接資本, 資源開發等 3次産業에 151件等 産業技術部門이 全體의 80%를 차지하고 數學, 物理, 化學等 基礎科學은 134件으로 20%에 不過하다.

科技處의 調查研究開發事業은 72년부터 그 投資方向이 轉換되었다.

71년까지는 基礎研究에 置重하고 産業技術研究도 應用段階에 不過했으나 72年度부터는 新技術開發을 包含 工業化 및 試驗研究에 主眼을 두고 있다. 또 研究成果의 企業化를 促進하기 爲해 「파미로프 플렌트」단배까지도 支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産業技術가운데서도 特히 重化學工業育成 輸出戰略産業의 育成에 主力을 기울여 73年의 境遇 戰略産業 技術開發에 55%(7천5백만원)을 重點 投資하는 등 意慾的 姿勢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産業技術 開發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研究開發 成果의 企業化 또는 實用化에로의 直結이라는 面에서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이의 解決을 爲하여 科學技術處는 74年度부터는 産業界와의 共同研究에 重點을 두는 한편 企業의 積極的인 參與를 努成하기 爲하여 各種 案內書 및 冊子를 發刊 弘報活動을 強化하고 있다.

이는 産業界가 實際必要로 하는 課題를 研究開發하여 企業의 技術의 問題點을 타개하여 주는 制度로서 産學協同의 動機를

提供해 주는 좋은 契機가 될 것이다.

特히 技術開發促進法의 制定에 따라 民間企業이 技術開發準備金을 積立 使用한 境遇 이의 全額 損金算入이 許容되므로 政府와의 共同研究에 따르는 企業體의 研究費 負擔額에 對하여는 稅制上 支援이 따르게 된다.

또한 企業體가 政府와 共同研究開發事業을 遂行한 경우 研究開發의 成果로서 政府와 共同 所有된 工業所有權中 産業發展에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된 것에 對하여는 當該企業體에 無償으로 그 工業所有權 또는 研究機器 設備 및 試作品을 讓與하거나 實施權者에 對하여 實施料에 全部 또는 一部가 免除되며 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나 韓國科學技術研究所가 技術開發한 成果를 最初로 企業化하는 境遇 그 投資額 100分의 6에 相當하는 金額이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되므로 技術部發을 支援하기 爲한 施策은 制度的인 側面에 어느 程度整備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産業界의 技術革新에 對한 積極的 姿勢이다. 現在 우리의 立場이 政府와 企業體가 協力하여 重工業育成, 輸出戰略産業을 爲한 技術開發에 總力을 競走하여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短縮시키는데 主力하여야 할 때이며 아울러 先進技術을 積極導入하여 이를 消化 改良하며 아울러 自主的인 技術開發體制을 整備할 時期이기 때문이다.

重要科學技術振興關係稅制

1. 기술개발 준비금 제도

(취지) 技術開發의 促進 企業이 技術개발을 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尙차 發生할 必要한 費用을 所得計算上 미리 損金으로 인정하여 攄으로써 技術開發에 필요로 하는 資金을 攄적하게 하여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는 新技術의 개발을 攄진코자 하는 稅制上의 支援策.

(내용) 營業세법 제1조 제2호의 제조업을 營業하는 者가 당해 事業年度 또는 과세 기간의 所得의 5% 또는 術技導入의 代價에 尙당하는 金額을 攄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損金으로 산입토록 함.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원인은 기술 도입 계약에 의하여 技術을 導入한 者가 당해 事業年度 또는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의 5%에 尙당하는 金額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損金으로 計상함.

(비고) 이 事項은 技術開發促進法 第三條 經濟의 安定과 성장에 關한 긴급명령 제조經濟의 安定과 성장에 關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세특례 등에 關한 規定에 依함.

2. 특정연구 기관에 대한 稅制

(취지) 重要研究機關의 研究活動의 保護 育成.

(내용) ① 대상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과학원, 한국원자력연구소.

② 법인세 면제

③ 同機關이 직접 使用하기 爲하여 國內生産이 不可能한 物 資로서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에 對한 物品稅 免除

④ 同機關에 도급되는 출연금과 위탁 研究費는 이를 지급한 個人 또는 法人에 對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각각 산입.

(비고) 이 事項은 租稅減免規制法 제14조 5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2호와 제13조 제1항 제3항에 依한다.

3. 기부금 공제

(취지) 教育및 科學技術 振興을 爲한 기부의 장려.

(내용) 지정 기부금으로서 기술 진흥을 爲한 기부금과 장학금 및 學術研究를 爲한 기부금에 對한 損金 산입.

(비고) 이 事項은 所得稅法 제21조 제7호 소득세법 施行令 第58조 第1항 第6호 同施行令 第42조 第2항에 依한다.

4. 投資에 對한 稅額 控除 制度

(취지) 新技術의 企業化 促進

(내용) 特許 받은 國內技術의 開發 성과나 韓國科學技術研究所가 기술 開發한 성과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으로서 재무부 장관과 協議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인정하는 事業을 기업화하는 경우 그 投資한 總額의 100분의 6에 尙당하는 金額을 소득세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함.

(비고) 이 事項은 所得稅法 제11조 제1항 제15호, 同施行令 第25조 第1항 第17호, 法人稅法 第24조 第1항 第15호, 同施行令 第70조 第1항 第17호에 依한다.

5. 特別尙加

(취지) 新技術 企業化 설비 및 연구시설의 급속한 진부화에 對 처하여 再投資를 용이하게 함.

① 신기술 企業化 기계설비

(내용) 國民 經濟上 緊要하다고 科學技術處長官이 인정하는 國內研究의 개발 성과와 外國으로부터 도입한 技術의 개발및 개발 성과를 最初로 企業化하는 경우 일반尙加 법 위역에 그 100분의 30에 尙당하는 金額을 가산한 金額.

② 과학진흥을 爲한 研究施設

(내용) 과학기술진흥법상의 科學技術의 진흥을 目的으로 하는 研究에 직접 使用되는 施設(尙加율은 上同).

(비고) 이 事項은 法人稅法 施行令 第51조 第1항 第7호, 第51 조 第1항 第5호에 依한다.

6. 시험연구비의 손금 산입

(취지) 研究活動의 支援

(내용) 시험연구비(제품의 試작, 제품의 연구 등을 爲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對한 損金 산입.

(비고) 이 事項은 法人稅法 第17조 第10항 第6호 同施行令 第38조 第5호에 依한다.

7. 시험연구용 물품의 관세 감면

(취지) 研究活動의 支援

(내용) 科學技術의 시험 연구에 使用하는 물품으로서 ① 國際 機構 또는 外國政府와의 協定에 依하여 設립된 科學技術研究 團體가 수입하는 物品 ② 地方自治團體가 수입하는 物品 ③ 기타 비영리 법인이 수입하는 物品에 對한 관세 減免.

技術用役은 登錄業体만 可能

閣議에서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 議決

國務會議은 「技術用役育成法 시행령」을 議決하여 用役業의 登錄을 ▲종합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인기술용역업으로 구분하고 登錄된 해당기술이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用役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全文 23條 附則으로 된 이 시행령은 또 政府投資業體가 外國用役業者에게 用役을 發注할 때는 主무부장관을 거쳐 科技處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했으며 登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과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以內的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 시행령은 또한 技術士만으로 用役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部門에 대해서만 認定技術士(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建設부문의 전문분야는 技術士에 限하도록 했다.

技術用役 육성법 施行令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용역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제2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말한다.

▲제3조(용역업 등록의 구분) ①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의 등록은 종합기술용역, 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종합기술용역업은 3개 이상의 전문기술용역업을 포괄하는 용역업을 말한다.

③전문기술용역업은 별표 2중1개 부문의 기술용역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개인기술용역업은 별표3의 기술용역부문중 1개의 전문분야의 용역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등록기준등) ①종합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인정기술사라 한다)로 한다. 다만 건설부문의 전문분야는 기술사에 한한다.

<1.>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졸업자(1966년 이후 졸업자는 문교부에 학위등록이 된다) 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전문학교졸업자로서 당해과학기술부문에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자.

<2.> 타법령에 의하여 당해과학기술부문의 기술자격을 가진자.

④ 제3항의 인정기술사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용역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용역업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금지산 또는 한정재산의 신고를 받은자.
2.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 제6조 제2호내지 제4호의 사유로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6조(등록신청) 용역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구분(종합기술용역, 전문기술용역, 개인기술용역별)
2. 소재지
3. 명 칭
4.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5. 용역업 등록대상(기술용역부문 또는 전문분야)
6. 자산평가액 또는 자본금
7. 시 설
8. 기술능력(기술사, 인정기술사 및 기술사의보유상황)
9.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용역업의 등록등)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용역업의 등록신청이 제4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한 후 용역업등록증과 용역업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경미한 미비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등록증등의 재교부) 용역업자가 그 용역업등록증 또

는 용역업 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 용역업자가 제6조 각호에 계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 범위) ① 용역업자는 등록된 당해 기술용역부문 또는 전문분야에 한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인정기술사의 용역업무범위는 기술사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문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1개의 용역계약의 내용이 2개 이상의 기술용역부문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기술용역부문에 등록된 종합기술용역업자는 종된 기술용역 부문이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종된 기술용역부문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용역계약서등에의 서명) 용역계약서 및 보고서에는 담당기술사(인정기술사를 포함한다)

▲제12조(학술용역등의 특례) ①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용역업자 아닌 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그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에게 발주하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
2.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위한 개발연구사업
3. 고도의 과학기술의 응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응용사업
4.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용역사업
5. 정부투자기업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행하는 용역사업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중 국내용역업자로서 수행 가능한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경제 계획된 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이 협의하여 국내용역업자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용역발주 승인신청)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 기업체가 용역업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내용역업자에 의한 수행능력, 외국용역업자 활용의 필요성 및 외국용역업자선정의 타당성 여부등

을 판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외국용역발주 승인신청) ① 용역발주자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용역업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외국용역발주승인) 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용역사업의 등록취소등)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용역업무를 정지시킨 때에는 이를 판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계획원,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와 경제담당무임소장관실소속 2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추천을 받은 자와 용역 및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과 출석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